

기자재구입심의 및 관리위원회 규정

□ 제정 : 2013. 10. 01.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교육 및 연구목적에 필요한 고가의 기자재의 도입 및 보유기자재의 합리적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자재도입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자재 구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
2. 기자재 중복 구입 여부
3. 구입하고자 하는 기자재의 우선순위
4. 기자재 구입예산의 운용방안
5. 기자재의 생산국, 기자재의 규격, 성능 등의 적절성 여부
6. 기자재 도입에 따른 설치 공간 및 부대 시설확보 여부
7. 기자재 불용품 처리 및 매각 여부
8.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한다.

- ② 위원장 및 위원은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-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.
- ④ 위원장과 보직 교직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회의)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2/3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6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후생관재과 직원으로 한다.

제7조(구매 요청 및 심의) ① 각 학부 및 연구소 등(이하 “각 기관”이라 한다)에서 총액기준 내자 3,000만원, 외자 미화 30,000달러 이상 (미화 이외 통화는 원화 환산금액 3,000만원 이상)의 기자재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련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필요한 경우 기준 금액 이하의 도입건을 심의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각 기관에서 제출한 관련서류를 참고하여, 구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, 중복 여부 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각 기관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 “구입불가” 판정을 받은 기자재는 구입할 수 없으며,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8조(운영세칙)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